총학생회선거규약 11-1-2

규정번호 11-1-2
제정일자 1997.11.1
최근개정 2025.1.23
개정차수 3차 개정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약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총학생회 대표를 선출하고 총학생회의 자치활동을 신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선거방법) 본 회 모든 선거는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선거로 선출한다.

제3조(선거권) 총학생회칙 제4조(자격) 및 제44조(선거권)에 규정된 자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4조(피선거권) 총학생회 회칙 제45조(피선거권)에 규정된 자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2장 선거관리위원회

제5조(구성) ① 위원장, 상임위원,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학부별 대표들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총학생회 집행부와 각 학과 부학생회장으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매년 10월 중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구성한다.

제6조(기능)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선관위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5.1.23.)

1. 입후보자의 자격심사
2.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보관
3. 선거홍보용 벽보(포스터) 제작 (단, 디자인은 후보자가 제작)(개정 2025.1.23.)
4. 선거홍보물 관리(개정 2025.1.23.)
   가. 선거현수막은 선관위가 제작한 것 외에 후보자당 2개까지만 설치
   나. <삭제(2025.1.23.)>
   다. 전종의 홍보물은 선관위의 사전심의
5. 선거 일시 안내 (변경시 변경안내)(개정 2025.1.23.)
   가. 선거는 매년 10월에 개시한다.(개정 2025.1.23.)
   나. 선거공고는 투표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5.1.23.)
6. 투표소 및 기표소 내외의 질서유지 및 감독

7. 선거운동의 불법성 및 선거운동 기간내 후보자간의 이의신청심의(개정 2025.1.23.)
8.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
9.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사항
10. 선거인명부 열람 관련업무
11. 산업체 별도위탁반 유세 및 선거시기 확정업무

제7조(회의) 선관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6조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3장 후보자 등록

제8조(후보자 등록) 총·부학생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·부 각 1명씩 1조로 하여 선관위의 선거시행 공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등록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

제9조(등록서류) 후보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후보자 등록서 (소정양식)
2. 약력 및 자기소개서 (소정양식)
3. 명함판 사진 2매
4. 선거벽보용 공약서 1매
5. 재학증명서 1부
6. 학과장 추천서
7. 성적증명서
8. 서약서
9. 투·개표 참관인 명단

제10조(입후보자 자격심사) ①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입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후보에게 통보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체 또는 보완토록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11조(입후보 사퇴)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에게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투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사퇴할 수 없다.(개정 2025.1.23.)

제4장 투·개표 및 당선자 공고

제12조(투표일 공고) 투표일은 입후보 등록일자 등과 같이 동시 공고한다.

제13조(참관인) ① 각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시 10인 이내의 참관인 명단을 선관위에 등록하여

야 하며 선관위에 등록된 참관인에 한해 각 투표장에 1인씩 입회시킬 수 있다.

② 참관인은 투·개표 과정에서 부당(또는 부정)하다고 생각되는 사실에 대하여 투·개표 중지 및 부당한(또는 부정) 사실에 대하여 선관위에 조사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참관인은 투·개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.

제14조(투·개표) ①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이 관리 감독하고 개표는 학생지도위원장의 입회하에 선관위원장의 개표 선언으로 선관위원이 진행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개표 오차율이 전체 투표인원의 1% 이하일 경우 무시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15조(투표함) 투표함의 크기 및 형태는 선관위에서 별도 결정한다.

제16조(투표용지)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제작하고 선관위원장의 검인을 필한 것을 사용한다.

제17조(기표절차) ① 투표인은 선관위원에게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투표인은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반드시 한곳에만 기표한 후 투표한다.

③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분실한 경우 재교부하지 않는다.

제18조(무효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무효표로 판정한다.(개정 2025.1.23.)

1.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
2.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
3. 기입 표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
4. 2중 기표 또는 기표가 없는 것
5. <삭제(2025.1.23.)>

제19조(당선) ① 당선은 경선의 경우 30% 이상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, 단독후보일 경우 유권자 30% 이상의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두 후보 이상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등록없이 7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.

③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하여야 한다.(개정 2025.1.23.)

제20조(개표중지) 위원장은 개표장소가 소란하거나 또는 개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시에는 개표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.

제21조(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)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의결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.(개정 2025.1.23.)

1. 위원 및 위원회에 대하여 폭행, 협박,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
2. 집, 종합 및 개인 유세 벽보 등에서 부정한 방법 또는 왜곡된 비방으로 선거의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
3. 기타 학칙, 회칙 및 본 규약을 위반한 자
4. 입후보자 등록취소,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선관위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22조(기타 사항) 기타 이 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.(개정 2025.1.23.)

제5장 이의신청

제23조(제소)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제소한다.(개정 2025.1.23.)

② 이의 신청시 반드시 해당 입후보자가 직접 제소한다.

제24조(심사) 선관위는 제소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하고 그 즉시 공고한다.

1. 선거무효 : 선거무효시 재선거를 실시한다.
2. 당선무효 : 당선무효 시 선관위 의결에 따른다.(개정 2025.1.23.)
3. 기각 : 제소된 이의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소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기각한다.

제25조(재선거) 재선거는 상기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.

제6장 선거운동

제26조(유세) 유세는 다음과 같다.

1. 합동유세 :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일시, 장소에서 주·야 각 1회, 후보자 전원이 참석하여 합동유세를 가진다.
2. 개인유세 : 유세기간 중 선관위가 지정하는 일시, 장소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.

제27조(벽보, 현수막, 홍보물) 일체의 홍보물은 선관위에서 사전 심의 후 배포한다.

제7장 보 칙

제28조(재정) 선관위의 경비는 총학생회비로 지출한다.

제29조 본 규정의 해석상 야기되는 문제는 학생지도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10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약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, 제4조, 제5조제1항, 제6조, 제6조제3호·제4호, 제6조제4호나목, 제6조제5호, 제6조제5호가목·나목, 제6조제7호, 제7조, 제10조제1항, 제11조, 제14조제1항·제2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, 제18조제5호, 제19조제1항·제3항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제1항, 제24조제2호)